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069
----------	-------

발의연월일 : 2019. 11. 29.

발의자 : 김현권 · 안호영 · 김철민  
서삼석 · 백혜련 · 윤준호  
위성곤 · 박재호 · 김성환  
맹성규 · 우원식 · 도종환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공사 등 각종 공사의 예정가격 작성 시 관련 법률 또는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료(이하 “사회보험료”라 함)를 반영하고 있으며, 공사 수행업체의 보험 미가입 방지 및 건설 분야 일용직근로자의 사회보장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공사업체가 건설일용직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영수증을 발주기관에 제출하면, 대금 지급 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사회보험료 범위 내에서 정산지급하는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산림사업도 공사업체에 사회보험료를 반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설현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지침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를 운영하면서, 해당 법률에 사회보험료의 부담금액과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하고 있어, 산림사업도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 적용 사업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와 법령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의 금액과 부담방법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산림사업 계약의 원칙) ① 산림사업 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사업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4조의2(산림사업 계약의 원칙)</p> <p>① 산림사업 계약 당사자는 각기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p> <p>② 산림사업 계약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사업금액, 사업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p>